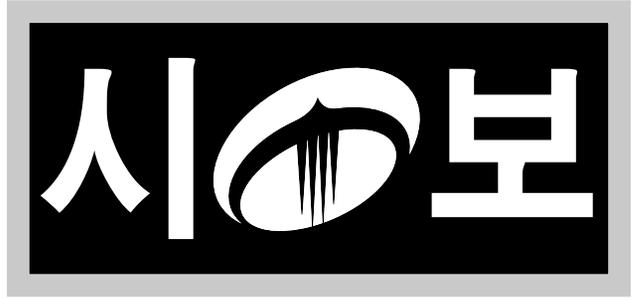


포 항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50호 2009. 10. 13(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항 시

- 시장지시사항..... 2
- ◀ 조 려 ▶
-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제957호) 5
-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958호) 47
-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59호) 50
-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60호) 55
-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961호)..... 60
-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962호) 67
- ◀ 규 칙 ▶
-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23호) 69
- ◀ 입법예고 ▶
- 포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1034호) 85
- ◀ 공 고 ▶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관리 참여 신청안내 공고(제2009-1052호)..... 90
- 第159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제8호) 98

회								
람								

시장 지시사항

- 2009. 10. 12(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사업 지도점검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감사에 지적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청렴의식을 심어주기 바람. 	전 부 서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09-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관련 업무 담당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북한 나진항 개발과 운영권을 확보한 것은 영일만항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행정력을 집중하여 관광, 물류 등 교류확대를 추진 할 중국관련 업무 담당팀을 만들어 운영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09-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동북3성 주요도시 공무원 파견근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동북3성 주변의 주요도시(훈춘, 장춘)와 교류 확대를 위한 공무원 파견근무를 추진하기 바람. 	경제통상과 (자치행정과)
'09-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해운업체(코스코사)에 영일만항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나진항 운영권을 확보한 중국 해운업체 코스코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기 바람, - 영일만항을 홍보하고 사전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항만정책팀
'09-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교육을 활용한 동북3성과 교류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면서 산업단지 견학이 언제든지 가능한 지역이므로 새마을교육 관련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 중국 동북3성 주민들에게 새마을 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잦은 왕래를 통하여 교류확대가 되도록 추진 하기 바람. 	새마을봉사과
'09-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RO(세계로봇올림픽아드) 홍보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이 로봇 도시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중앙방송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 세계 각국의 참여 청소년들에게 홈스테이를 제공 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미래산업팀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한일합방 100년을 맞아 관련사업 아이디어 개발 추진 - 내년은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해로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고민하고 추진 해주기 바람. 	자치행정과
'09-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운동 연수사업 관련 국제협력단과 업무협약 - 새마을운동 연수사업과 관련 국제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람. 	새마을봉사과
'09-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와 새마을의 역사를 새천년기념관에 전시 - 포스코 역사와 새마을의 역사를 당시의 숨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천년기념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람. 	새마을봉사과
'09-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역 포항함 포항유치 조속추진 - 퇴역한 포항함을 포항에 유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09-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공사 조속설립 추진 - 개발공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경제통상과
'09-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에 죽도시장 홍보 철저 - 아직 죽도시장을 잘 모르는 대구시민이 다수 있음. - 대구의 지하철 등을 통해 죽도시장을 대구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 해양수산과
'09-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활성화와 효율성 높은 과메기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09-082 (추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소비확대 시책 적극추진 - 쌀 막걸리, 동동주 제조 및 이용 확대방안 추진 등 쌀 소비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 지역의 전 기관단체들과 함께 먹기 캠페인 전개, 홍보용 술잔 제공 등으로 적극 추진하기 바람. 	농축산과 (환경위생과)
'09-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 적극개발 시행 - 요즈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이며 육아문제 해결에 과감히 투자해야 함. - 전임담당(6급)을 지정하여 해당분야 선진국 독일 시책을 벤치마킹 하고 전문 연구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아이디어를 개발 하는 등 깊이 있게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149	○ 필리핀 이민여성 활용 영어유치원 개원 - 필리핀 이민여성들을 현지영어교사로 활용한 영어 유치원을 남북 구 1개소씩 개원하여 운영하기 바람.	평생학습과
'09-150	○ 삼성그룹 전 회장관련 대구시 도시조성사업 벤치마킹 - 대구시의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과 관련 호암로 조성, 동상제막,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벤치마킹하고, - 포항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로 및 청암광장 조성사업에 추가하여 적용할 사항이 있는 지 검토 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 설 과 (테라노바팀)
'09-151	○ 동빈내항 하수관거 직강화 저해 시설 철거 조속처리 - 동빈내항 하수관거 직강화사업에 방해되는 시설물 (점포)철거를 위해 협의취득 등에 최선을 다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바람.	하수도과
'09-152	○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여러번 당부 한 바 있음, 보다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바람.	여성문화회관
'09-153	○ 일본 가와사키 외국인조례 연구검토 -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신문에 연재된 일본 가와사키 외국인조례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적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여성문화회관)

부시장 지시사항

- 2009. 10. 12(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0. 12)	○ 보조금사업 관련 직원교육 철저 -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 전부서의 보조금사업 담당자는 전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전 부 서 (기획예산과)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10.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예방 준비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예방 시기를 맞아 예산확보와 헬기임차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금년부터는 감시원 사역범위를 행정 “리” 단위에서 자연부락단위로 전환하여 인원 및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가뭄대책 물절약 운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되는 가뭄으로 갈수기인 동절기 수도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 가뭄대책을 적극 실천하여 물절약 운동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 현장행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 공무원들은 사업현장 방문 등 현지출장을 통한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불편해소와 민원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p>도시녹지과 (기획예산과) (남, 북구청)</p> <p>전 부 서 (상수도사업소)</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p>

조 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0월 13일

포항시 조례 제 957 호

포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포항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포항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를 하지 아니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함 것으로 본다.

1. 제정이유

법제처에서 2010년까지 현행 법률 전부를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우리시에서도 기존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 하고자 함.(별표 1)

나. 기존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 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별표 2)

조례 제명 띄어쓰기

[별표 1]

국	부서명	조	례	명	현	행	개	정	비고
의 회 시 무 국	의 회 시 무 국	포항시의회공인조례	포항시의회공인조례	포항시의회공인조례	포항시의회공인조례	포항시의회공인조례	포항시의회 공인 조례	포항시의회 공인 조례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 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 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 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포항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징수 조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징수 조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징수 조례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포항시의회 고문번호사 운영 조례	포항시의회 고문번호사 운영 조례						
		포항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포항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국	부서명	조 례 명	현 행	개 정	비고
	감시담당관실	포항시 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 포항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포항시 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 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 포항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포항시 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포항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략사업추진본부	전략경영팀	포항시 정책자문단설치조례	포항시 정책자문단설치조례	포항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미래산업팀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포항시 공인조례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포항시 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 시민의날조례	포항시 공인조례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포항시 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 시민의날조례	포항시 공인 조례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포항시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시민의 날 조례	

국	부서명	조	레	명	현	행	개	정	비고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포항시시민상조례			포항시시민상조례	포항시시민상조례	포항시 시민상 조례	포항시 시민상 조례	
		포항시포상조례			포항시포상조례	포항시포상조례	포항시 포상 조례	포항시 포상 조례	
		포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포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포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포항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			포항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	포항시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	포항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포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포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포항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포항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기 획 예 산 과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포항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포항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포항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포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포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국	부서명	조 례 명	현 행	개 정	비고
자 치 행 정 국	새 미 을 보 상 과	포항시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포항시민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포항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포항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포항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포항시새마을소득사업용자금이자보호조례	포항시새마을소득사업용자금이자보호조례 조례	포항시 새마을소득사업 용자금이자보호조금 지급 조례	
정 보 통 신 과	문 화 관 광 과	포항시지명위원회조례	포항시지명위원회조례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포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포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포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에위한기금설치조례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에위한기금설치조례	포항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체 육 지 원 과	정 보 통 신 과	포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포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포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포항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포항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경 제 신 업 국	경 제 통 상 과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	포항시 지역경제 협의회 운영 조례	
		포항시소비자보호조례	포항시소비자보호조례	포항시 소비자보호 조례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포항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국	부서명	조 례 명	현 행	개 정	비고	
경 제 산업국	경 제 통상과	포항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등체결에 관한조례	포항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등체결에 관한조례	포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조례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유리한용자금이자보조금지조례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유리한용자금이자보조금지조례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용자금 이자보조금지금 조례		
	기 업 노동과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포항시 농공지구 오피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포항시 농공지구 오피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포항시 농공지구 오피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포항시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포항시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포항시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포항시 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포항시 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포항시 노사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수임증지조례	포항시 수임증지조례	포항시 수임증지 조례		
	재 정 관리과	포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포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포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포항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포항시 공시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포항시 공시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포항시 공시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포항시 공시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국	부서명	조	례	명	현	행	개	정	비고
경 제 산 업 국	농 축 산 과	포항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포항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포항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포항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포항시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포항시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항시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농업생신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포항시농업생신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포항시농업생신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포항시농업생신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포항시농업생신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포항시	농업생신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포항시농업경영안정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포항시농업경영안정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포항시농업경영안정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포항시농업경영안정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포항시농업경영안정용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용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포항시어업경영안정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포항시어업경영안정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포항시어업경영안정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포항시어업경영안정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포항시어업경영안정용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포항시	어업경영안정용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주 민 생 활 지 원 과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포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사 회 복 지 과	포항시장애인증합복지관운영조례	포항시장애인증합복지관운영조례	포항시장애인증합복지관운영조례	포항시장애인증합복지관운영조례	포항시 장애인증합복지관 운영 조례	포항시	장애인증합복지관 운영 조례	
		포항시활체어택시운영조례	포항시활체어택시운영조례	포항시활체어택시운영조례	포항시활체어택시운영조례	포항시 활체어택시 운영 조례	포항시	활체어택시 운영 조례	

국	부서명	조 례 명	현 행	개 정	비고	
민 생 활 지 원 국	사 회 복 지 과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 장애인재 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포항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포항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포항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여 성 가 족 과	포항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포항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포항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포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포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포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조례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환 경 위 생 과	포항시청소년수련관시설운영조례	포항시청소년수련관시설운영조례	포항시청소년수련관시설운영조례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포항시환경기본조례	포항시환경기본조례	포항시환경기본조례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포항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포항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포항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포항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청 소 과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포항시청소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청소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청소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국	부서명	조 례 명	현 행	개 정	비고	
건 설 도 시 국	건 설 과	포항시도로복구비원인지부담금징수조례	포항시도로복구비원인지부담금징수조례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지부담금 징수 조례		
		포항시가로명예관한조례	포항시가로명예관한조례	포항시 가로명예 관한 조례		
		포항시영세노점상전입자금용자에대한이자보 금지급조례	포항시영세노점상전입자금용자에대한이자보 금지급조례	포항시 영세노점상 전입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보 금지급 조례		
		포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하고태료부과징수 조례	포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하고태료부과징수 조례	포항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포항시건설공사의시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	포항시건설공사의시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 조례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도 시 계 획 과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포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포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포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포항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포항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포항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포항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포항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포항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 난 안 전 과	포항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포항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포항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국	부서명	조 례 명	현 행	개 정	비고
건설 도시국	재난 안전과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포항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포항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축과 교통 행정과 도시 복지과	건축과 교통 행정과 도시 복지과	포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교통안전및도시교통대책위원회운영조례	포항시교통안전및도시교통대책위원회운영조례	포항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포항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포항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포항시복지시설관리조례	포항시복지시설관리조례	포항시 복지시설 관리 조례	
보건소	보건소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조례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조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포항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포항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포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포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포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포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포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국	부서명	조 례 명	현 행	개 정	비고	
사업소	건설 환경 사업소	포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포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포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상수도 사업소	포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포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포항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통신물 도매시 장관리 사무소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여성문 화회관	포항시여성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포항시여성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노인복 지회관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읍·면·동	읍·면·동	포항시읍면출장소조례	포항시읍면출장소조례	포항시 읍면출장소 조례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정수 조례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정수 조례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 례	
			포항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포항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포항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포항시리개발위원회조례	포항시리개발위원회조례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별표 2]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 변경 등 (조례)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의 회 사무국	의 회 사무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 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54조	「지방자치법」 제56조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표(「」)포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 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 행령 제19조의2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내지107조의, 법 제108조 및 제111조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법 제117조 및 제120조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37조	법 제146조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제9조제4항 중	법 제36조제5항, 법 제20조	법 제41조제5항, 법 제27조	
			제9조의3제1항 중	공무원 예비 규정	「공무원 예비 규정」	
			제16조 본문 중	포항시의회의회의규칙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본문 중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와포항시 의회의회의규칙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의 회 사무국	의 회 사무국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조 본문 중 제2조 본문 중 제6조(이의제기)	지방자치법 제36조 법 제36조제4항 제6조(이의제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법 제41조제4항 제6조(이의제기) 삭제 (2009. 4. 1 지방자치법 개정)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낫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의 회 사무국	의 회 사무국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제1조 본문 중 제2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37조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지방자치법」 제42조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의 회 사무국	의 회 사무국	포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 직원징수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의 회 사무국	의 회 사무국	포항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 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본문 중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지방자치법제125조제3항, 동 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의 회 사무국	의 회 사무국	제3조제3항 중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제64조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의 회 사무국	의 회 사무국	<p>포항시의회결산감사위원선 임및운영에관한조례</p> <p>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모상금지금에관한조례</p> <p>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p> <p>포항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p>	<p>제7조제2항 중</p> <p>제9조 본문 중</p> <p>제1조 본문 중</p> <p>제5조제1항 중</p> <p>제1조 본문 중</p> <p>제4조 본문 중</p> <p>제5조제1항 중</p> <p>제5조제2항 중</p> <p>제8조 본문 중</p>	<p>지방공기업법</p> <p>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p> <p>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법시행령 제15조의3</p> <p>공무원연금법시행령</p> <p>「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p> <p>영 제19조의 4</p> <p>법 제36조제1항, 법제125조</p> <p>법 제118조</p> <p>포항시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 등지급규정</p>	<p>「지방공기업법」</p>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p> <p>「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p> <p>「공무원연금법 시행령」</p> <p>「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p> <p>영 제54조</p> <p>법 제41조제1항, 법 제134조</p> <p>법 제127조</p> <p>「포항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p>	<p>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포(「 」)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p>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전략사업 추진본부	미래산업팀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6항 중 제11조제2호 중	형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포항시 행정법규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본문 중	포항시각종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1조 본문 중	산업기술평단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와산업기술평단지원에 관한법률제5조	「산업기술평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산업기술평단촉진법」 제7조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포항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2조제1항 중	민법	「민법」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포항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제10조제3항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조제1호 중	병역법	「병역법」	
			제22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 조 본문 중 제3조제2항제6호 중 제5조제1 호 중 제5조제2 호 중 제5조 본문 중	통합방위법 지방해양수산청장 향토예비군실치법 민방위기본법 제6조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14조	「통합방위법」 지방해양안전청장 「향토예비군실치법」 「민방위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낱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포항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제1 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포항시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	제2조 본문 중	의료법	「의료법」	
		포항시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	제1 조 본문 중	수의사법	「수의사법」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본문 중	포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 조 본문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 항제1 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지방자치법」 제90조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실 립·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행 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및지방 재정법	「국가재정법」· 「물품관리 법」 및 「지방재정법」		
		제1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9조제1호 중	병역법	「병역법」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포(「 」)포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제10조제2항 중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1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1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1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10조제1호 중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제1조 본문 중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포항시의정회실치및육상조례	제10조 본문 중	포항시보조금지금조례가	「포항시 보조금 지급 조례」로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실치및 운영조례	제1조 본문중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회실치및운영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등법시 행령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낫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 법시행령 제2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조항 등 변경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6조 본문 중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포항 시재무회계규칙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포항시 새마을소득사업용자금 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용 조례	제19조의2제1,2항 중 제7조 본문 중 제11조제3항 중 제26조 본문 중	지역특구법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시재무회계규칙	「지역특구법」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낫포(「」)포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문화관광과	포항시지역위원회조례 포항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품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포항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품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지원금 지원기금설치조례	제1조 본문 중 제1조 본문 중 제2조제2호 중 제2조의2 본문 중 제15조제2항 중	측량법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측량법」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포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1조 본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제19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제23조 본문 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제7호 중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포(「 」)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주문, 조항 등 변경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및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34조제2항	「전자정부법」 제34조제2항	
		제8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전자정부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제9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시행령 제57조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전자정부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1 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낱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제12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3조제2항중	포항시재무회계규칙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체육지원과		제1 조 본문 중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 조례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2항 중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9조제2호 중	병역법	「병역법」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포항시 소비자보호조례	제1조 본문 중 제6조 본문 중 제10조제2항 중 제7조제5항 중 제11조 본문 중 제12조 본문 중 제13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 중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2호 중 제10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기본법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기본법」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포(「 」)포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경제산업국		포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중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제10조제2항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포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26조 본문 중	도시계획법, 건축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기업노동과	포항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은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제1조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내지제27조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나포(「」)포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제3조 본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문, 조항 등 변경
			제8조제2항 중	건설업법	「건설업법」	
		제12조 본문 중	수질환경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질환경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27조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4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4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경제산업국	기업노동과	포항시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1조 본문 중 제4조 본문 중 제6조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제65조 지방재정법 제115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제78조 「지방재정법」 제94조		
		포항시 근로자증합복지관운영조례	제11조 본문 중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시세 조례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령		
		포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정법시행령 제21조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1호가목 중 제40조제1항제4호 중	영 제21조제1항 「건축법」 제49조제1항 재정경제부장관 「건축법」 제49조제1항	영 제26조제1항 「건축법」 제57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 「건축법」 제57조제1항		
		포항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1조 본문 중	장에인복지법 제26조 및 제38조 장에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제42조 「장애인복지법」		
			제7조 본문 중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 조 본문 중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낫포(「」)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제4조제3호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5조	
			제4조제5호 중	영 제39조제2항	영 제34조제2항	
			제4조제6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5조제4항 중	법 제48조제4호	법 제46조제3호	
			제12조 본문 중	농지관리운영지침	「농지관리운영지침」	
			제5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제17조제2항 중	포항시재무회계규칙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 조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3조제1항 중	법 제108조제1항	법 제1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중	법 제108조제4항 및 제5항	법 제110조제4항 및 제5항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포항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제1조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낫포(「 」)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1조제6항	법 제53조제6항	
			제11조제3항 중	법 제43조제2항	법 제40조제2항	
			제12조제3항 중	법 제53조	법 제55조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 지원과	포항시어업경영안정용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9조 본문 중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유수면관리법」 과 「포항시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중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본문 중	공유수면관리법과포항시소하천 정비사업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과 「포항시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 지원과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제1조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경상북도 부동산 증가수로 비의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중	경상북도 부동산 증가수 및 비의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부동산 증가수로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본문 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 지원과	포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 지원과	포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본문 중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의료급여법	「지방재정법」 「의료급여법」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시설위 탁운영에 관한조례	제1조 본문 중 제11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령·시행규칙 및 보건사회부훈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령·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사회복지과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중 제10조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제1조 본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 규정에 의거 거 동불편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3조에 의거 교통약자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제2조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6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본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주민생활 지원국	사회복지과	포항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제9조제2호 중 제9조제3호 중 제10조 본문 중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 및운영조례	제1조 본문 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2조 본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14조제2항 중	포항시재무회계규칙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포항시 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포항시금설모지설치및사용조례	제4조제2항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포항시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제5조 본문 중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제2항 중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호 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주민생활 지원국	여성가족과	포항시 청소년지도육성조례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 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시설운영조례	제1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 중 제1조 본문 중 제3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환경위생과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1조 본문 중 제2조제1호 중 제3조제1항 중 제6조제1항 중 제13조 본문 중 제14조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등법 제13조제3항...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 지방재정법 폐기물관리법과 포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3항...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지방재정법」 「폐기물 관리법」 과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낱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주문, 조항 등 변경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위생과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1 조 본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포(「 」)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제1 조 본문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3조제3항 중	항만법	「항만법」	
			제5조제5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과	포항시청소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1 조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청소과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 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 중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건설도시국	건설과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포항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 자에대 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포항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1조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 제43조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3조 본문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농어촌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본문 중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도로법」 제76조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 내지 제4조	법 제2조		
			제3조제1항 중	법 제64조 및 제67조	법 제76조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주문, 조항 등 변경	
			제4조제2항 중	포항시재무회계규칙	포항시재무회계규칙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본문 중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도로법」 제2조 및 제7조	
제2조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제38조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제4항 중 제58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 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 규칙」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 조 본문 중 제6조 본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법시행령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 행령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 허가에대한조례	제1조 본문 중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 의2,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2조 및 제23조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2조 및 제23조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2조 및 제23조
			제3조제1항 중	법 제30조	법 제50조		
			제3조제1항 중	법 제8조	법 제24조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	법 제24조제2항		
			제3조제2항제1호 중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	영 제22조제8호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조제2항제2호다목중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 지적법	영 제22조제9호 「지적법」	
			제3조제2항제3호 중	영 제6조제1항8호의4	영 제22조제10호	
			제3조제2항제4호가목중	건축법,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3항제4호 중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중	건축법	「건축법」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타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제3조제4항제1호 중	법 제4조	법 제16조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중	영 제8조	영 제24조	
			제4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2	법 제38조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제2호자목중 제4조제2항제2호다목중 제4조제2항제2호자목중 제4조제2항제3호 중 제4조제4항 중 제6조 본문 중 제1 조 본문 중 제1 조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기준에관한규칙 법 제12조의2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 사도법 지적법 영 제6조제1항제3호 건축법 시행령 영 제8조의 법 제9조 및 제12조의2 자연공원법 온천법시행령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법 제38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 「지적법」 영 제22조제3호 「건축법 시행령」 영 제24조의 법 제25조 및 제38조 「자연공원법」 「온천법 시행령」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조 본문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법」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제2조 본문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법」	
			제3조 본문 중	영 제7조제5항	영 제7조제6항	
			제9조제1항 중	제2항	제3항	
			제9조제3항 중	제2항	제3항	
	재난안전과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제2조 본문 중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	
			제1조 본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본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본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제1조 본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제2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6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 중	포항시사무위임전결규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 행정자치부 소하친정비법	「포항시 사무위임 전결 규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관리 규정」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 관리 규정」 .. 행정안전부 「소하친 정비법」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포(「 」)포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포항시소하친점용로및사용로징수조례	제1 조 본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포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 조 본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	제3조제2항제3호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포항시 건축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도로법」	
			제5조제3항제4호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건설도시국	건축과	포항시 건축 조례	제11조제1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포(「」)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제12조제3항 중	건축법, 주택법에 의거, 건축법	「건축법」, 「주택법」에 의거 「건축법」	
			제1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	
			제1조 본문 중	주택법	「주택법」	
			제2조제1항 중	주택법	「주택법」	
			제5조제2항제7호 중	주택법	「주택법」	
	교통행정과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6조제1항 중	주택법	「주택법」
				제10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제1조 본문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본문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 중	주차장법 및 교통사업법	「주차장법」 및 「교통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차장법	「주차장법」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p>건설도시국</p>		<p>포항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p>	<p>제3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제1항제3호 중 제3조제1항제4호 중 제3조제1항제5호 중 제3조제1항제6호 중 제3조제1항제7호 중 제3조제1항제8호 중 제3조제1항제9호 중</p>	<p>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도로법 제43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주차장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제1호</p>	<p>「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도로법」 제41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도로교통법」 제160조 「주차장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p>	<p>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나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p>	
	<p>도시녹지과</p>	<p>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p>	<p>제6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중</p>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건설도시국	도시녹지과	포항시 녹지시설관리조례	제12조 본문 중	건축법 제32조	「건축법」 제42조	
			제24조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농약관리법, 산림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농약관리법」, 「산림조합법」	
보건소	보건소	포항시 보건소뫼보건지소이용조례	제1조 본문 중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낫포(「」)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
			제3조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본문 중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제6조제2항 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제1조 본문 중	농어촌등보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 본문 중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사업소	건설환경사업소	포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 본문 중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제1조 본문 중	하수도법 제21조	「하수도법」 제65조	
	상수도사업소	포항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제11조제1호 중	지역공기업법 시행령	「지역공기업법 시행령」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p>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업소</p>		<p>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p>	<p>제1조 본문 중 제5조 본문 중 제12조제5항 중 제17조제1항 중 제25조 본문 중 제42조제5항 중 제57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7조제1항 중 제79조제1항 중</p>	<p>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법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제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의제1항제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법 제71조제2항규정에의한 표준 승품장은 시행규칙 제49조에서 농림부장관</p>	<p>「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법 제35조제4항 시행규칙 제16조제7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삭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p>	<p>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낙포(「」)포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 조항 등 변경</p>
	<p>여성문화회관 용조례</p>	<p>포항시여성문화회관운영및사업조례</p>	<p>제20조 본문 중</p>	<p>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p>	<p>「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국	부서명	조례명	조·항·호	현행	개정	비고
구·읍·면·동	읍·면·동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1항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장수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4항	
구·읍·면·동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2항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 낱표(「」)표기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주문, 조항 등 변경
	리통반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5항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0월 13일

포항시 조례 제 958 호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4세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포항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1. 제안이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 (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다. 효도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를 정함 (안 제3조)
- 라. 효도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함 (안 제4조)
- 마. 효도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내용 규정 (안 제6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0월 13일

포항시 조례 제 959 호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포항시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고보조금
- 2.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 및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
- 3. 도 또는 시 이외의 자(단체)로 부터의 출연금

-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제3호중 “영 제37조의 규정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를 삭제 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제4조제2항 중 “시장” 을 “포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각호와”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를 “법 제2조제2호에” 로 하고,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영 제3조의2에 의한”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6월” 을 “6개월”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5%” 를 “5퍼센트”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 마다” 를 “회계연도 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회” 를 “포함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한다

-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
-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 3.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 담당주사

제12조제1항 중 “매 회계년도” 를 “매 회계연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명 포항시 <u>기초생활보장기금</u> 설치 및 운용 조례</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u>령</u>”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u>기초생활보장기금</u>(이하 “<u>기금</u>”이라 한다)의 <u>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기금의 조성)</u>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북도 또는 시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u>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u> 5. <u>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u> 6. <u>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u> <p><u>제3조(사업의 범위)</u>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u>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u>)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p>제명 포항시 <u>자활기금</u> 설치 및 운용 조례</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p> <p><u>제2조(기금의 조성)</u> 포항시 자활기금(이하 “<u>기금</u>”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고보조금 2. 경상북도(이하 “<u>도</u>”라 한다) 및 포항시(이하 “<u>시</u>”라 한다)의 출연금 3. 도 및 시 이외의 자(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u>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u> 7. <u>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u> <p><u>제3조(사업의 범위)</u>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시행령」(이하 “<u>령</u>”이라 한다)제37조에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삭제) 5. 그 밖에 6.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이하 “<u>법</u>”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

현 행	개 정
<p>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 략) ② <u>시장</u>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 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세입·세출예산의 로 처리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p> <p>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 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 으로서 다음 <u>각호와</u> 같다. 1. <u>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u> 2. ~ 5. (생 략)</p> <p>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1. (생 략)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u>6월이상</u>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 하여 <u>6월이상</u>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생 략)</p> <p>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 가 있는 때에는 <u>5%</u>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p> <p>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 <u>회계연도 마다</u> 기금의 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p>	<p><u>성지원</u></p> <p>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대상) <u>각 호의 어느 하나와</u>..... 1. <u>법 제2조제2호에</u>..... <u>영 제3조의2에 의한</u>..... 2. ~ 5. (현행과 같음)</p> <p>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2. <u>6개월</u>..... <u>6개월</u>..... 3.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 ① <u>5퍼센트</u>.....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u>회계연도 마다</u>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1. (생 략)</p> <p>2. <u>당해연도</u>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p> <p>3. <u>기타</u>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u>시의회에</u>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하고, 기금분임 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p> <p>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u>매회계년도</u>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해당연도</u>.....</p> <p>3. <u>그 밖에</u>.....</p> <p>③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p> <p>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p> <p>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p> <p>3.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 담당주사</p> <p>제12조(결산 및 보고) ①<u>매 회계연도</u>.....</p> <p>②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본문에 인용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문 중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개정함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사업의 범위에 자산형성지원 추가 신설함

다. 자활기금 용도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하는” 단서조항 삭제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함

마. 기금관리공무원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함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0월 13일

포항시 조례 제 960 호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한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8-1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 종류)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해당하며,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사업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사업장 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자는 포항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하되 등록 장애인 중 근로활동이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비율은 60퍼센트 이상, 비장애인은 전체 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위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공신력, 전문성,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포항시의회 의원
 3. 포항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국장
 4. 그 밖에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조례에 정한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의 위탁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위수탁운영 계약서에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 수탁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갱신은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급여) 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이 과소 발생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급여는 수탁자와 피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고용장애인, 비장애인, 직원에 대한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 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3. 제9조의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사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와 위탁취소를 원할 경우
4.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운영에 사용되던 부대시설, 장비, 집기 등 일체를 포함시에 반환한다.

제16조(고용승계)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사업 참여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운영 (재위탁) 신청서

신청 법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법인설립일	
운영 사항	시설(사업)명			
	소재지			
	시설의장			
	직원 및 근로인원	○직원 수 : 명 ○근로인원 : 명(장애인 , 비장애인)		
	사업운영 경험			
자산상황				
수탁신청 동기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 (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

 주소 :

 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예산서포함)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

시 설 명	
소 재 지	
운영법인명 및 운영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소재지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위탁운영기간	
특 기 사 항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인

1. 제정이유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설치와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 사업장 운영에 따른 절차 및 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사업장에 근로할 수 있는 사업 참여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함(안 제9조)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위탁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0월 13일

포항시 조례 제 961 호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포항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 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항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 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 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2. 포항시의회
3.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의원, 시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이 맡는다.

제9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홍보 등 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천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은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 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시 인증제품
 -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 5. 제18조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 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7조(행정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등

제21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각 부서 업무 평가 시 평가 항목에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수도법」,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23조 관련)

1.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환경위생과】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서 제출한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집계 이행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은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 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환경위생과로 제출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위생과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계획수립 및 교육실적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1. 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용이하게 하고 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하며, 안정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친환경상품의 보급확대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구성 및 임기
- 협의회 주요 자문·심의사항 및 회의

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및 구매의무 범위 지정
-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설정 및 관리
- 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다.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정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구매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 지원 강구

라. 보칙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포상 및 사무분장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0월 13일

포항시 조례 제 962 호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 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포항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이 필요할 경우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안
-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 5.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7. 어린이 보호구역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행 지도)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초등학교장 등에게 교사 또는 학부모 등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포항시는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함 (안 제3조)
- 나.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필요할 경우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안 제4조)
- 다.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초등학교장 등에게 교사 또는 학부모 등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7조)
- 라.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8조)

규 칙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0월 13일

포항시 규칙 제 523 호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로연장지원금) ①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의한 항로연장지원금은 각 항로별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연간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항로연장지원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특화항로 운항손실보조금) 조례 제4조제2호에 의한 특화항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시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항로별로 운항손실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배선으로 특화 항로를 개설할 경우 운항 회차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장려금) ①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 이용 화물에 대한 이용장려금은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급하며, 동일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② 이용장려금은 실 화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 화주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5조(선사 의무적 운항) 제2조 및 제3조의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운항 손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선사는 당해 항로는 협약서에 정한 내용 대로 운항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4조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사정) ①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지원금 신청 시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신청서류는 선사의 객관적인 물동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항 지방해양항만청 및 포항세관의 수출입 화물자료를 집계한 자료를 첨부 하여 처리실적을 입증하여야 한다. 화주나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선하증권 또는 포항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반환 사유 등)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신청자가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자금지원을 받았음이 확인 될 때
 2. 지원금 신청자가 제5조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였을 때
 3.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다른 선사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4. 「관세법」 등 관계법에 의한 수출입 금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5. 신청자의 내용을 증빙할 객관적 서류 요청에 임하지 않았을 경우
 6. 그 밖에 항로개설 협약서에서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정산 기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산서를 지원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포항시의회 의원
3. 경상북도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
4. 포항시 항만물류업무 소관 국장(본부장)
5.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
6. 포항세관 수출입업무 소관 과장
7. 포항항만물류협회장
8.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9. 관련분야 전문 교수
10. 지역 수출입업체 대표
11. 그 밖에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규모 및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 2.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정기회의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제11조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만물류담당과장(팀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5조(사업계획 수립) ①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년초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는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조례에 의한 시행 전 또는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포항영일만항과 ○○국 ○○항』 간
특화항로 개설·운항 협약서(안)

포 항 시

『포항영일만항과 ○○국 ○○항』 간
특화항로 개설·운항 협약서

포항시(이하 “갑” 이라 한다)와 ○○회사는(이하 “을” 이라 한다) 포항영일만항과 ○○국 ○○항 간 “특화항로 개설 및 운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 과 “을” 간에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 이라 한다)과 ○○국 ○○항 간에 특화항로 개설·운항에 따른 협약기간 운항조건, 행·재정 지원, 책임한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화항로” 라 함은 영일만항과 ○○국 ○○항간에 운항하는 항로를 말한다.
2. “추가항로” 라 함은 특화항로 이외에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를 말한다.
3. “선박구입비” 라 함은 특화항로 운항에 투입되는 선박구입에 따른 비용 또는 외부로 부터 용선하는 경우 그 용선료를 말한다.
4. “부대시설” 이라 함은 영일만항의 입출항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5. “손실이익액(이하 “이익액”이라 한다)” 이라 함은 특화항로 수입에서 항로 운항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 “손실보조금” 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갑” 이 “을” 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특화항로 운항수입” 이라 함은 특화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화물을 선적·운송함으로써 화주로 부터 수수하는 해상운임, 영일만항 THC, ○○국 ○○항 THC등을 말한다.
8. “특화항로 운항비용” 이라 함은 영일만항과 ○○국 ○○항간의 운항에 따른 변동비(하역비, 장비사용료, 대리점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고정비(선박용선료, 항비, 유류비, 항만 장비유지비)를 말한다. 단,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화재, 해상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하며 상세한 내용을 별첨의 항로 손익산정기준을 따른다.
9. “추가항로 수입” 이라 함은 영일만항과 ○○국 ○○항로 이외의 추가항로 운항에 따라 선적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해상운임, 국내THC, ○○국 ○○항 THC 등 을 말한다.
10. “추가항로비용” 이라 함은 특화항로 이외의 추가항로 운항에 따른 항비, 유류비 등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11. “회계기준” 이라 함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 을 말한다.
12. “공식 환율” 이라 함은 한국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해당일의 기준 환율을 말한다.

제3조(협약기간) 특화항로 개설·운항 협약기간은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운항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갑” 과 “을” 은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운항

제4조(사무소 설치) 특화항로 운항선사의 사무소는 포항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출입항 및 추가항로 운항)** ① 특화항로의 국내 출발항은 영일만항으로 하고, 최종 도착항은 ○○국 ○○항으로 하며 ○○항을 기항한다.
- ② 추가항로 운항은 특화항로의 정요(定曜) 정시(定時)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을” 이 “갑” 과 협의하여 운항할 수 있다.
- ③ 특화항로 운항 보조기간 중 추가항로 운항에 따른 비용은 “을” 이 전액 부담한다.

- 제6조(운항조건)** ① 최초 특화항로 개설운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특화항로 운항은 매월 2항차 이상으로 한다.
- ③ 영일만항 입출항은 반드시 정요 정시에 하여야 한다.
- ④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운항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 은 “갑” 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 ⑤ 특화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을” 이 결정하되 정요 정시 운항에 지장이 없는 선박 이어야 하며, “을” 의 필요에 의해 최초 운항선박의 교체나 추가 선박 투입 등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 이 일체 부담한다.

- 제7조(화물확보책임 및 우선취급화물)** ① 특화항로 운항에 필요한 화물은 “을” 이 확보하여야 하며, “갑” 은 선적물동량확보를 위해 협조 지원한다.
- ② “을” 은 수출용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 화물에 대하여는 일반화물에 대하여 우선 취급 하여야 하며,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화주가 요구하는 규격용기와 적합한 부대시설 등을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행·재정 지원

- 제8조(행정지원)** “갑” 은 특화항로 운항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1. 영일만항의 수출물량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2. 그 밖에 “을” 의 요청에 의거 “갑”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익액 산정)** ① 특화항로 운항회계를 구분회계로 하고, 이익액은 특화항로 운항수입 에서 특화항로 운항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구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별첨 “특화항로손익산정기준” 에 따른다.

- 제10조(손실보조금 지원)** ① 손실보조금 지원대상은 특화항로 운항손실액으로 한정한다.
- ② 특화항로 운항 보조기간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 ③ 특화항로 운항 손실보조금은 당해연도 특화항로 운항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원 까지 지원하되,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의 도비를 지원받아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교부신청·교부 등 회계감사)** ① 보조금 교부 신청교부 등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을” 은 “갑” 에게 상·하반기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때까지의 운항손실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최초정산은 매년 운항 1년차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운항이익을 결산하고 중간 지급분을 차감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② “을” 이 당해연도 최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갑” 은 공인회계사와 사전감사계약을 체결 하고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감사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 ③ “을” 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갑” 은 “을” 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④ “을” 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 할 수 있다.
- ⑤ “을” 은 “갑” 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적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⑥ “갑” 은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까지 정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이익배분) 보조기간 중 특화항로 운항에 따른 이익액이 발생할 경우 “을” 은 이익액의 50퍼센트를 “갑” 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갑” 은 당해연도 최종보조금 정산 교부 시 손실보조금 지원액에서 이익액을 차감하여 “을” 에게 교부한다.

제4장 책임 및 의무

제13조(책임한계) ① 특화항로 운항에 따른 제반 경영책임은 “을” 이 지며, 특화항로 개설에 투입되는 선박구입비, 부대시설 확보 및 입·출항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을” 이 부담한다.

② 특화항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내외 사고에 대하여는 “을” 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③ “을” 은 특화항로 개설·운항에 따른 관련법령 및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약금) ①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최초 특화항로 개설운항이 지연될 경우 “갑” 은 지연 항차 당 300만원으로 계산한 뒤 위약금으로 당해연도 보조금 정산교부 시 지원액에서 차감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② 특화항로운항 협약기간 중 “을” 이 고의로 무단운항 중단 등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 은 운항중단 항차 당 300만원 계산 뒤 위약금을 “을” 에게 부과징수하고 “을” 은 해당 위약금을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보조기간 중에는 당해연도 최종 보조금 정산교부 시 지원액에서 차감하여 교부한다.

제15조(이행보증) ① 이 협약에 대한 이행보증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한다.

② “을” 은 특화항로 취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기간 만료일까지의 이행확약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금액 1억원 한도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제1금융권의 지급 보증서를 이행보증금으로 “갑” 에게 납부한다.

제16조(행정제재 등) ① 태풍, 폭풍(경보), 천재지변, 정기검사 및 선박수리, 항만사정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 은 “갑” 에게 즉시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 과 상호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화항로 개설운항지연, 무단운항중단 등의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 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3의 선사를 선정 운항하여도 “을” 은 일체의

행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불가항력 해당여부는 “갑” 과 “을” 이 해운관례 및 해운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협의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 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협약이 해지될 경우 “을” 이 기 납부한 이행 보증금은 “갑” 에 귀속된다.

제17조(서류비치 및 열람) “을” 은 특화항로 운항에 필요한 회계장부, 운항 기록부 등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갑” 이 서류를 열람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응해야 하고, 기타 “갑” 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송실적 통보) “을” 은 특화항로 운항에 따른 운송실적 등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9조(관할법원) 특화항로 개설운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쟁송사항에 대하여는 “갑”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준거법) “갑” 과 “을” 간에 발생한 쟁송사항에 대한 준거법령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다.

제21조(분쟁해결 순서) “갑” 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공정한 제3의 기관(대한상사중재원 등)으로 하여금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제23조(기타사항)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 은 “을” 이 특화항로의 원활한 개설 및 운항을 위하여 제반 관청, 협회, 협의회 등의 인준을 득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③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④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포항시

대표자 포항시장 ○○○ (직인)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을】

○○○

대표자 ○○○ 대표이사 ○○○ (직인)

○○○ 시 ○○○구(시·군) ○○○동 ○○○번지

[별지 제1호 별첨]

〈특화항로 손익 산정 기준〉

구분	항목	산정기준	비고
특화항로 손익액		○ 특화항로 운항수입 - 특화항로 운항비용	
특화항로 손익액 누계 (2년)	○ 특화항로 손익액 누계	○ 특화항로 1차년도 손익액 + 특화항로 2차년도 손익액	
특화항로 수입	○ 해상운임 ○ 국내 THC ○ ○○국○○항THC ○ 기타잡수입	□ 영일만항 - ○○국 ○○항간에 선적되는 수출, 수입 화물을 기준으로 한 수입 ○ 크기(20·40FT 등) 및 용도(DRY, REEFER 등) 별로 실 운임으로 산정 ○ 공컨테이너 운임도 실 운임으로 산정 ○ 영일만항에서 선적, 하역하는 수출, 수입 물량 THC 설비 산정 ○ ○○국 ○○항에서 선적, 하역하는 수출, 수입 물량 THC설비 산정 ○ 해상운임, 국내 THC, ○○국 ○○항 THC외 수입	
특화항로 가변비	<<가변비>> ○ 하역비 ○ 장비사용료 ○ 대리점 수수료 ○ 이자비용	□ 영일만항과 ○○국 ○○항 운항비용 ○ 하역회사 선정 후 계약서 또는 견적가격에 의거 원가 인정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컨테이너 이송비 및 기타 화물비를 포함 ○ TURN TIME (20)일 기준으로 사업 계획서상 크기 및 용도별 소요량 인정 산정 ○ 국내 대리점 수수료 불인정, ○○국 대리점 수수료, 컨테이너 관리비, 선박 입출항 관리 비목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대리점 수수료 : 수출3%, 수입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영일만항→○○국항) : 선적운임 + ○○국 ○○항THC요금 - 수입(○○국항→영일만항) : 선적운임 + ○○국 ○○항THC요금 • 컨테이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단가 인정 • 선박 입출항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단가 인정 ※ ○○국 대리점 계약서 인정 ※ 수출입 1항차에 1회 발생 ○ 특화항로 개설, 운항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비용	

구분	항목	산 정 기 준	비고
특화 항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차 손익 ○ 외환 환산손익 ○ 일반관리비 ○ 기타잡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안함 ○ 고려안함 ○ 육상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비품, 거래처 홍보비, 광고 및 일반홍보비, 기타잡비용으로 총 운임의 4% 이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사무소 실제근무 인원 ● 타지역 소재 본사 부분 제외 ● 총 운임 : 특화항로 해상운임, 국내 THC, ○○국○○항 THC(보조금, 기타 잡수입 제외) ○ 하역비, 장비사용료, 대리점수수료, 이자비용,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특화항로 운항에 따른 기타 잡비용 	
특화 항로 가변비	<p><<고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구입비 (용선료) ○ 항비 ○ 유류비 ○ 항만 장비 유지비 ○ 기타잡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구입비(용선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요, 정시 입출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경비절감 선박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선 : 구입비 등 근거자료 제시 - 용선 : 용선계약서 인정 ● 용선료 비목 : 선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비, 기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구입비(용선료)는 특화항로 비용에 전액 산정 - 선박구입(자선) 시 감가상각비는 2년간 적용 년도별 배분 - 감가상각비는 정율법(내용년수 9년, 잔존가액 10% 적용) - 일반수리비 및 정기검사수리비 인정 ※ 단, 추가선원인건비 : 기항항수에 따라 소요인건비 배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항 : 포항항 항비적용 ○ ○○국항 : ○○항 항비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비비목 : 입항료, 접안료, 강취방료, 도선료, 도선선료, 예선료, 정박료 등 ○ 구입 비용 적용 산정(근거서류) : 연료유, 디젤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항로에 소요되는 유류비 총액 계산 산정 ○ 고려안함 ○ 용선료, 항비, 유류비, 항만장비유지비를 제외한 특화항로 운항에 따른 기타 잡비용 	

[별지 제2호 서식]

대한민국 포항영일만항 ~ 00국 00항 정기 컨테이너항로 개설 협약서

포항시와 00회사는 「대한민국 포항영일만항 ~ 00국 00 항」 간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개시를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00회사는 「대한민국 포항영일만항 ~ 00국 00 항」 간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을 0개월 이내에 개시하고, 주 1항차 운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포항시는 「대한민국 포항영일만항 ~ 00국 00 항」 간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과 관련하여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관련 조례에 의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 그 밖에 추가 필요한 사항이나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 협약서는 한국어와 00어로 각 0부를 작성·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하며 서명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00회사대표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항로연장지원금·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선박명)	()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항로명 및 기항지				
⑥ 사업 면허 종류				
⑦ 면허번호			⑧ 허가일자	
⑨ 신청금액	금	원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 하역비, 해상운임, 손실보전금, 선사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 하역비, 해상운임(추가), 항만시설사용료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또는 포항세관이
확인 집계한 물동량 자료
 - 손실보전금 : 별지1호 별첨에 규정된 증빙서류
- 사업면허증(사본) 1부

※ 지원금 신청기간 : 상반기는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 ④번 신청자가 대상 선박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 ⑧번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 면허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외국해운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번 신청금액을 작성하실 때는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3조,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를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1~6월)는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 운항손실보조금은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60일 이내에 신청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 서식]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이용장려금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명 칭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인	신청금액	금 원	전 화	
			F A X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비 산출내역 :
4. 물동량 처리기간 :
5. 사업기대효과 (별지 작성 가능)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 부. (선하증권, 수출입신고필증, 보세운송신고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5호 서식]

정 산 서

- 1. 사업명 :
-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 고

- 3.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규모	사업비			집 행			잔 액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보고 합니다.

20

상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포항시장 귀하

1. 제정이유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에 따른 위임한 사항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일만항을 환동해 물류중심 항만으로 조기 육성 및 영일만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나. 항로연장지원금 지급
- 다. 특화항로 운항손실보조금 지원
- 라. 이용장려금 지급기준
- 마. 선사 의무적 운항
- 바. 지원금의 신청 및 사정
- 사.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
- 아. 지원금 정산 기한(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차. 사업계획 수립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09-1034호

「포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10. 7.

포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6. 7. 19.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시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그 밖에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급식지원 범위를 식품비 뿐만 아니라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으로 확대하고,
 - (2)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표 2에 따른 식재료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3)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교급식 개선과 급식의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음
- 나.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4조)
 - (1) 급식지원 대상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으로 규정
- 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8조)
 - (1)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정의
- 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거 시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2) 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3) 시 지역거점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계획생산에 의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지역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마.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안 제12조)

- (1) 시장 및 교육장(교육감)은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고,
- (2)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과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3)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업의 발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안전과 질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4. 조례안 : 붙 임

포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및 기타
 - 나. 경상북도지사 및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지역 농 특산물
-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학교
-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급식경비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상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적절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 3. 해당학교 재적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 5. 급식시행 계획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및 업무담당 국장
 2. 교육청의 담당국(과)장
 3. 시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자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자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농민(생산자) 단체 대표
 8.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시의 담당업무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급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포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사항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설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 6.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 7.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 2.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 3. 생산단지 조성 및 종합 교육시설
- 4.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지역내 법인, 농업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교육장(교육감)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교육장(교육감)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지도·감독 하고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09 - 1052호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관리 참여 신청안내 공고

포항시(새마을봉사과)에서 2009년11월16일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일로부터 15일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 10. 12

1. 포항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관리 계획

가. 위탁받을 자의 자격 : 포항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2.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
- 4. 기타 1호 내지 3호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나. 위탁받을 자의 시설기준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 사무실
- 3. 검사용 고가차량, 안전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등 안전도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다. 위탁기간 : 2009. 11. 16 ~ 2011.11.15(2년간)

라. 위탁받을 자의 임무

- 1.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검사에 대한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 3. 위탁 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마. 제출서류

- 1. 안전도검사 업무위탁 지정 신청서
- 2. 안전도검사 계획서(업무추진 계획안)
- 3.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체인 경우 회원명부 제출)

4.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검사장비명세서, 보유장비 사진, 안전도검사요원 자격증 사본 등)

5. 수수료 수입 운영계획안, 결산이익금처분안, 사회봉사실적

바.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 공고일로부터 15일간(직접방문 접수)

※ 우편접수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사. 제출기관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새마을봉사과(270-2363)

아.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 제출서류에 따른 서류심사

1. 선정 방법

- 1개 업체 신청 시 : 재공고

- 2개 업체 이상 신청 시 : 포항시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심의 후 심의 결과에 따라 1개 업체 선정

2. 선정 기준 : 신청자 자격 및 시설기준과 위탁관리방안 등을 종합하여 결정(서류심사)

3. 결과 통보 : 서면 통보 및 공고

2.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 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관리계획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관련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탁 선정 시 이 공고사항 외 사항과 각종 해석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30일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포항시장 귀하</p>			
구비서류 :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수 수 료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 수 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21,000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38,000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14,000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14,000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20,000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800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14,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20,000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800
5. 영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11,000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에 준함.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 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관리 참여
신청서 평가 세부기준

1. 신청서 평가 방법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된 신청서는 우리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평가(30점)는 우리시에서 자체평가하고, 주관적평가(70점)는 평가위원이 평가.

2.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배 점 기 준					평 가 주 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절대 평가 (30점)	소 계		30	30	24	18	12	6	객 관 적 평 가
	■ 검사수행 종사자 확보 상태	확보인원수	10	10	8	6	4	2	
	■ 검사수행 장비확보현황	장비현황	9	9	7	5	4	2	
	■ 사무실확보현황	m ²	5	5	4	3	2	1	
	■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3	3	2.5	2.0	1.5	1.0	
		유동비율	3	3	2.5	2.0	1.5	1.0	
주관적 평가분 야 (70점)	소 계		70	70	56	42	28	14	주 관 적 평 가
	결산이익금 처리계획(사회환원)		10	10	8	6	4	2	
	소계		50	50	40	30	20	10	
	계획의 현실성		15	15	12	9	6	3	
	계획의 효율성		10	10	8	6	4	2	
	계획의 충실도		10	10	8	6	4	2	
	수수료집행계획 등		15	15	12	9	6	3	
	■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실적		10	10	8	6	4	2	
합 계			100	100	80	60	40	20	

3. 등급별 평가기준

가. 등급별 기준

구 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비 고
가중치	100%	80%	60%	40%	20%	내용무 0점처리

나. 등급별 평가기준

- 1) 최우수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2) 우 수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절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3) 보 통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미 흡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아주미흡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검사여건의 타당성	24		배점
검사수행자 종사자 확보 현황	10	• 기술자포함 5명 이상	10
		• 기술자포함 4명 미만	8
		• 기술자포함 3명 미만	6
		• 기술자포함 2명 미만	4
		• 기술자포함 1명 미만	2
검사수행 장비 확보 현황	9	• 검사용고가차량, 안전사다리필히포함 8종이상	9
		• 검사용고가차량, 안전사다리필히포함 7종미만	7
		• 검사용고가차량, 안전사다리필히포함 6종미만	5
		• 검사용고가차량, 안전사다리필히포함 5종미만	4
		• 검사용고가차량, 안전사다리필히포함 5종미만	2
사무실 확보여부	5	• 사무실 50㎡ 이상	5
		• 사무실 50㎡ ~ 40㎡미만	4
		• 사무실 40㎡ ~ 30㎡	3
		• 사무실 30㎡ ~ 20㎡	2
		• 사무실 20㎡	1
업체의 재무구조	6		
자기자본비율	.3	• 당해 수행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3.0
		• 당해 수행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75%~100%	2.5
		• 당해 수행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50%~75%	2.0
		• 당해 수행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50%~30%	1.5
		• 당해 수행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30% 미만	1.0
유동비율	3	• 당해 수행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100% 이상	3.0
		• 당해 수행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75%~100%	2.5

객
관
적
평
가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 당해 수행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50%~75%	2.0	
		• 당해 수행업자 유동 비율/평균유동비율 50%~30%	1.5	
		• 당해 수행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30% 미만	1.0	
합계	30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위탁수행계획 측면	70		배점	
결산이익금 처리 계획 (사회환원)	10	• 500만원 이상	10	주 관 식 평 가
		• 400만원 ~ 500만원	8	
		• 300만원 ~ 400만원	6	
		• 200만원 ~ 300만원	4	
		• 200만원 미만	2	
사업계획서 (계획의 현실성, 효율성, 충실도, 수수료집행계획등)	50	• 최우수	50	
		• 우수	40	
		• 보통	30	
		• 미흡	20	
		• 아주미흡	10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실적	10	• 최우수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아주미흡	2	
합 계	70			

4. 위탁수행능력평가(신청서 설명회 개최)

가. 평가일시 : 별도통지

나. 평가방법 : 업체별 신청서에 채점표에 의거 점수부여

- 1) 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2)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포항시의회공고 제 8 호

第159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

地方自治法 第45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第159回 浦項市
議會(臨時會)를 다음과 같이 集會함을 公告합니다.

日時：2009年 10月 19日(月曜日) 午前 11時 30分

場所：浦項市議會 本會議場

2009년 10월 9일

浦項市議會議長 崔 榮 萬